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76
----------	-------

발의연월일 : 2020. 1. 6.

발의자 : 노웅래 · 송옥주 · 김철민

설훈 · 정은혜 · 이상현

이찬열 · 이후삼 · 김민기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

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특허·논문 등”을 “특허·논문·표준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특허, 논문 등”을 “특허, 논문, 표준 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실시비용 및 특허”를 “실시비용, 특허 및 표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u>특허·논문 등</u>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p> <p>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특허, 논문 등</u>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p> <p>3. ~ 5. (생 략)</p> <p>② ~ ⑦ (생 략)</p> <p>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p>	<p>제2조(정의)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u>특허·논문·표준 등</u>-----</p> <p>-----</p> <p>-----.</p> <p>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특허, 논문, 표준 등</u>-----</p> <p>-----</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p> <p>-----</p>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 치평가의 <u>실시비용 및 특허</u> 관 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u>실시비용, 특허 및 표준</u> ----- -----.
---	---